

업무규정

제 정 2025. 1.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 증권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및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
- “시장”이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넥스트레이드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 “회원”이란 「회원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을 말한다.
- “호가”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지정가호가 :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이하 “종목”이라 한다),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
 -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22조제2항에서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 마. 스톱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 바. 중간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5. “주문”이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 나. 시장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주문
- 다. 최유리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호다목에 따른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려는 주문
- 라. 최우선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호라목에 따른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려는 주문
- 마. 스톱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제4호마목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매매거래를 하려는 주문
- 바. 중간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제4호바목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주문
- 사. 목표가주문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6. “위탁매매”란 회원이 해당 회원 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7. “자기매매”란 회원이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8. “NXT시스템”이란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 “회원시스템”이란 회원의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NXT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회원단말기”란 회원의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된 단말기 중 넥스트레이드의 승인을 받아 NXT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11. “프로그램매매”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2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8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주식집단의 일부를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알고리즘거래”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13.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 가.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전용 매매주문시스템(투자의 판단, 주문의 생성 및 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것
- 나. 가목에 따른 매매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세칙으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에 설치할 것
-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및 넥스트레이드의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장의 운영

제1절 시장의 구분 및 개폐

제3조(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규시장
2. 종가매매시장
3. 대량·바스켓매매시장

② 제1항제1호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프리마켓
2. 메인마켓
3. 애프터마켓

③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4조(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4.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한다)
5.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넥스트레이드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등) ①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제1호의 경우 해당 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한한다)의 매매거래를 정지(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의 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종결한다.

1. 한국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거나 종결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6조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

2.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넥스트레이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때에 시장의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③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공표, 그 밖에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매매거래의 종류 및 매매계약의 중개

제6조(매매거래의 종류)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일수의 계산 시 휴장일은 제외한다) 되는 날에 결제하는 보통거래로 한다.

제7조(매매계약의 중개) 회원 간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중개업무는 넥스트레이드가 수행한다.

제3절 호가

제8조(호가의 방법) 매매거래를 하려는 회원은 NXT시스템에 계좌별로 호가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일괄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제9조(호가접수시간) ① 호가는 호가접수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시장별 호가접수시간 및 그 변경, 그 밖에 호가접수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호가의 입력내용) 회원이 NXT시스템에 입력하는 호가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호가 사전점검의무) ① 회원은 호가를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의2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2조(호가의 효력 등) ①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9조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호가입력의 제한, 그 밖에 호가의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호가의 취소 및 정정) ①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한다.

② 제1항 외에 호가의 취소 및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호가의 기록) ① 넥스트레이드는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호가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NXT시스템에 기록한다.

② 제1항 외에 호가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거래

제1절 호가의 관리 및 가격제한

제15조(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 ①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프로그램매매(해당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매매에 한한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매도호가의 제한 및 사후관리) ①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정규시장(메인마켓에 한한다), 종가매매시장 및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4를 준용한다.

③ 넥스트레이드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6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① 회원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종가매매시장 또는 대량·바스켓매매시장에서 호가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호가의 가격제한폭) ① 호가가격은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산출·공표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 상한가 및 하한가의 산출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절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제19조(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호가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매매수량단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제20조(경쟁매매의 원칙) ①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르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한다.

② 개별경쟁매매에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같은 가격의 호가로 본다.
2. 같은 가격의 호가 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다만, 중간가호가는 같은 가격의 지정가호가에 우선한다.

제21조(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① 애프터마켓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0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 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 합치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의 모든 수량 및 합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의 모든 수량
2. 합치가격의 호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수량
 - 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 나. 타방의 호가수량 중 해당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④ 제3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직전의 가격과 같은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
2. 직전의 가격과 같은 가격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직전의 가격이 가장 높은 합치가격보다 높거나 가장 낮은 합치가격보다 낮은 경우 :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 나. 직전의 가격이 가장 높은 합치가격보다 낮고 가장 낮은 합치가격보다 높은

- 경우 :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합치가격 중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수량과 매도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① 정규시장(제2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의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1. 매도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
 - 가. 가장 낮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다만, 매도지정가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 나.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2. 매수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 가. 가장 높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다만, 매수지정가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 나. 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③ 제1항에 따른 가격은 매도호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와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 합치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20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 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제23조(종목별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1. 한국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종목
 -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
 -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제1항

2.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넥스트레이드가 인정하는 종목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①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특정 호가에 의한 잠정체결가격이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전산장애 또는 장애우려 시의 조치) ① 넥스트레이드는 NXT시스템의 장애, 회원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해당 시스템이 일정 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여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전산장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호가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접수의 정지(취소호가를 포함한 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매매거래의 정지·종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착오매매의 정정) ①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1. 넥스트레이드가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호가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착오매매의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거래(이하 “대규모착오매매”라 한다)에 대하여 회원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증가매매시장 및 대량·바스켓매매시장

제28조(증가매매) ① 증가매매는 증가매매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 받아 당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증가(「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8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15항에 따른 증가를 말한다)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종목에 대하여는 증가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증가매매에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증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대량매매) ① 대량매매는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같은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넥스트레이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③ 대량매매의 수량요건, 호가가격단위, 그 밖에 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바스켓매매) ① 바스켓매매는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같은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넥스트레이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바스켓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③ 바스켓 구성종목수, 수량요건, 그 밖에 바스켓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제31조(매매거래의 청산) ①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은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②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금액의 확정, 결제 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 등 매매거래의 청산에 관한 사항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넥스트레이드는 매매거래의 청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제공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매매거래의 결제) ①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는 법 제297조에 따라 한국에 탁결제원이 수행한다.

②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 및 대금의 지급 등 매매거래의 결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매매거래의 수탁 등

제33조(계좌의 설정 등) 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7조제3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주문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 ① 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주문방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수탁의 내용 및 방법) 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이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의 거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72조,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2. 제4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회원은 넥스트레이드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37조(주문의 처리 등)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주문내용을 접수순에 따라 회원시스템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해당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NXT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주문 및 매매체결내용의 정정 등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매매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매수대금 및 매도증권 등의 수입, 예탁, 반환, 인도 및 지급 등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제8조 단서에 따라 일괄하여 호가를 입력한 경우 그에 대한 주문·매매체결·배분내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수수료의 징수)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결제 시에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9조(회원과 위탁자 간 결제 등) 회원과 위탁자 간 결제, 위탁자의 결제불이행 시 처리, 그 밖에 위탁자 주문의 수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시장의 관리

제40조(시세 등의 공표) ①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1. 현재가격, 최저가격, 최고가격, 최저가격 및 최종가격
2. 거래량 및 거래대금
3. 그 밖에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호가정보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시세 등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시장정보의 관리) 넥스트레이드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정보를 그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회원, 그 밖에 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2조(회원통보사항) 넥스트레이드가 시장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회원의 자료제출 등) ① 넥스트레이드는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시스템이 관련법규,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알고리즘거래의 관리)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위한 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넥스트레이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①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거나 위탁자로부터 그 위탁을 받으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회원 또는 해당 위탁자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이용하는 매매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에 적합한 안정성 및 적정성을 갖출 것
2.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것
3.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회원은 해당 회원 또는 위탁자를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위한 계좌(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넥스트레이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고, 해당 위탁자에 대하여 설정한 모든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의 해지 등 수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넥스트레이드에 통보 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
2. 위탁자가 등록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을 회원이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과 그 말소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 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관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매매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넥스트레이드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그 밖에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시장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48조(호가전 예납 및 결제전 예납) 법 제378조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하여 호가 전에 또는 결제시한 전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매매거래내용의 통지) ① 넥스트레이드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매매관련자료의 보존기간) 넥스트레이드는 매매관련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한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호가의 입력내용 : 10년.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은 제외한다.
2. 제26조에서 정하는 착오매매의 정정 및 제27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 : 10년
3. 제49조에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 : 10년

제51조(시장감시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 ① 넥스트레이드는 영 제7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제공한다.

1. 호가, 체결가격 및 체결시각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호가 및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감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매매체결대상종목 및 거래량 관리 등) ①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대상상

품 중 해당 상품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매매거래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5 이하일 것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③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의 제한 등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을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